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사업내용을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과 동일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명칭 변경(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용어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치매지원센터 사업 현행화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타 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법제명 등을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과 내용이 동일되도록 조문을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

또한 제4조제5항에서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

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2020.8.31.)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와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서도 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공증”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입법 명확성과 경제성을 도모함.

- 안 제10조는 관련 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관계 법령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적 통일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9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명칭 및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조례명 및 안 제1조~제6조)
- 나. 사업내용 현행화(안 제3조)
- 다. 협약내용 공증 규정 삭제 (안 제4조)
- 라. 수탁자의 의무 일부 내용 삭제 (안 제6조)
- 마.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4조, 제6조)
- 바.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외
- 다. 입법예고(2022. 9. 15. ~ 10. 5./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을 “조례는”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 (이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 (이하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치매지원센터”를 각각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탁기관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지역보건법</u>」 제9조 및 「<u>치매관리법</u>」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치매지원센터</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치매지원센터</u> (이하 “<u>치매지원센터</u>”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u>치매지원센터</u>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u>영등포구</u>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사업) <u>치매지원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u>치매조기검진</u> 사업</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 ----- ----- ----- <u>치매안심센터</u> ----- ----- -----.</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 <u>치매안심센터</u> (이하 “<u>치매안심센터</u>”----- ----- -----.</p> <p>② <u>치매안심센터</u>----- ----- <u>영등포구</u>(이하 “<u>구</u>”라 한다) ----- -----.</p> <p>제3조(사업) <u>치매안심센터</u>는 「<u>치매관리법</u>」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p>

-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 3.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4.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상담
- 5. 재택 치매환자 방문·관리
-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 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 7.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

제4조(위탁운영) ① -----

----- 치매안심센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④ ----- 위원회-----

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
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
서 선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2. ~ 5. (생략)

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
간,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
무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
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
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
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
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
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
-- 1명-----

-----.

2. ~ 5. (현행과 같음)

⑤ -----

----- 한다.

제5조(운영규정) ① ----- 치매
안심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② ----- 치매안심센터-----

③ ----- 치매안심센터-----

④ -----

----- 치매안심센터-----

⑤ 수탁자는 -----

----- <후단 삭제>

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